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4. 25 선고 2023가단792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방인석, 유병일

피 고 1. B

소송대리인 C

2. D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1. C와 망 E(F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6. 24.자 증여계약은 7,832,089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 목록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5. 28.자 증여계약은 금 941,501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 B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773,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C와 망 E(F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9. 6. 24.자 증여계약 및 2020. 3. 6.자 증여계약1) 은 금 18,855,426원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금 18,855,4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8. C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물품 공급받음에 있어 외상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인 G에게 보험증권을 발행, 교부하였다.

나. 그런데 2015. 3. 31. C가 G에 대한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2018. 3. 30. 원고는 G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보험금 18,855,426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89623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16. ‘C는 원고에게 19,239,765원 및 그 중 18,855,426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는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각 부동산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하고, 각 부동산 지분별로 구분하여 가리킬 때에는 ‘H 지분’, ‘I 지분’이라고 일컫기로 한다)에 관하여 2019. 5. 28. 및 2019. 6. 24.에 걸쳐 이를 자신의 남동생인 E에게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2019. 5. 28.에 I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2019. 6. 24.에 H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함)을 체결하고, 2019. 5. 29. 및 2019. 6. 24.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은 2020. 3. 6.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포함하여 충남 홍성군 H, I 토지(이하 위 토지를 전부 일컬을 때에는 ‘H, I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H, I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D은 위 I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7,592,750원, H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63,162,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증여 후 2019. 10. 23.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포함하여 H, I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J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고, 2019. 10. 25. K조합 앞으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가 이 사건 매매 후에 2020. 4. 22. K조합 명의의 근저당권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아.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0. 3. 20.에 사망하여 그 모친 B가 망인을 단독상속하였고, 그 후 피고 B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20. 4. 16. 수리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느단392).

[인정근거]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가. C의 채무초과 상태 및 이 사건 증여의 사해성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및 사단법인 L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증여 당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3,7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

나. 사해의사

C는 이 사건 증여 당시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망인과 전득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수익자의 상속인 피고 B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망인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다만, 이 사건 증여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물반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게 되면 당초 책임재산이 아닌 범위까지 법률행위의 취소 및 회복을 명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수익자인 망인의 상속인 피고 B는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보전채권의 한도 내에서 목적물의 공동담보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목적물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 시점과 가까운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 액수와 같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그 시가에서 증여 당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 이 사건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이 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포함한 H, I의 토지 시가는 70,754,750원이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위 각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J 명의의 2019. 8. 12.자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채권최고액인 22,5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각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합계액은 8,773,590원 $\{=(70,754,750\text{원} - 22,500,000\text{원}) \times 2/11\}$ 원이다.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망인은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결국 망인과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는 금 8,773,5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 지분별로 그 지분의 가액이 지분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위 8,773,590원을 안분한 금액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제1 부동산 지분(H 지분)에 관하여는 7,832,089원 $(= 8,773,590\text{원} \times 63,162,000/70,754,750)$, 각 지분의 가액이 지분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H 토지와 I 토지의 가액 합계액에서 각 토지별로 해당 토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다)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제2부동산 지분(I 지분)에 관하여는 941,501원 $(= 8,773,590\text{원} \times 7,592,750/70,754,750)$ 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금 8,773,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전득자인 피고 D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을나 제1, 2, 3, 4, 5, 6호증,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매매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 D의 입장에서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전의 일부 지분소유자인 C의 자력 상태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 당시 C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D의 선의의 항변은 이유 있다.

가. 망인은 2020. 2. 14.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비롯하여 H, I 토지를 N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N는 망인에게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20. 2.경 망인의 친구이자 H, I 토지 근처에 살고 있던 M은 망인이 위 토지를 매도하려고 매물로 내놓은 것을 알고, 귀농에 관심이 있던 피고에게 연락하였고, 피고가 매수의향이 있다고 하자 망인에게 매매 교섭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이미 N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피고는 계약금 배액만큼 대금을 더한 가격에 H, I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다. 2020. 3. 초순경 망인은 N 주식회사에게 계약금 배액인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해약금 해제를 하였고, 피고는 2020. 3. 6.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를 하고, 2020. 3.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은 2020. 2. 2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H, I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근정

별지

1) 소장 청구취지 제1항은 '2019. 5. 28.자 증여계약' 기재를 누락하여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